

# 등록금심의위원회(5차) 회의록

	담당	주임	처장	총장
결재	조유나		"전결"	윤괴식

회의소집 통보일자	2016. 11. 16 (수)
위원정수	8명
재적위원	8명

1. 일시 : 2016년 11월 23일(수) 13:30 ~ 14:10

2. 장소 : 문경대학교 제1강의동 2층 NCS회의실

3. 참석 :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

소속	직명	성명	서명	비고
사무처	위원장	윤괴식	윤괴식	
기획처	위원	이상문	이상문	
문경대학교	위원	길민욱	길민욱	
본 대학 재학생	위원	이영호	“불참”	
본 대학 재학생	위원	안유정	안유정	
본 대학 재학생	위원	고민서	고민서	
본 대학 동문	위원	정명희	정명희	
관련전문가	위원	박선신	“불참”	

4. 안건

가. 2016학년도 교비회계 2차 추가경정예산관련 심의·의결 건

나. 등록금에 관한 규정 개정의 건

## 5. 회의내용

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에 앞서 재적위원 8명 중 6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므로 등록금심의 위원회 회의를 하다.

### 가. 2016학년도 교비회계 2차 추가경정예산 심의 · 의결 건

윤교식 위원장 : 2016학년도 교비회계 2차 추경 예산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.

앞서 배부해드린 2016학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한 회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(전체 위원 : 회의 자료를 검토하다.)

길민옥 위원 : 수입예산 부분이 많이 감소되어 보이는데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.

윤교식 위원장 : 2학기 등록기간이 마감되고 실제로 들어온 학부수업료를 계산한 결과 4,829,399천원으로 1차 추경예산인 4,859,730천원에서 실 수입액에 맞게 감소하였으며, 옥상 광중계기 임대료, 평생교육원의 단기수강료 및 일반 기부금에 대해 예상되는 실 수입액을 재계산하여 2차 추경 시 적용 하였습니다.

정명희 위원: 증가내역 중 국가 근로 장학금으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.

윤교식 위원장: 국가근로장학금의 증가는 1차 추경 시 교육부 수입 중 하나로 들어가 있었던 항목이나, 2015년 결산 관련하여 교육부에서 내려온 지침 중 국고보조금수입 구분에서 국가근로장학금은 교육부의 기타지원금으로 구분하고 있어 이에 맞게 2차 추경 때 교육부 수입에서 분리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증가하지는 않았습니다.

이상문 위원: 부서별 추가경정 예산 요구내역 중 시간강의료가 감소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.

윤교식 위원장: 해당 시간 강의료는 NCS기반 교과목 외래강사 인건비와 관련하여 특성화 사업비 지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에 맞게 감액을 요청 하였습니다.

고민서 위원: 교내 장학금도 많은 부분이 감소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?

윤피식 위원장: 교내 장학금의 경우, 등록금 수입이 감소하여 이에 대비하여 감액한 이유가 한가지 있으며, 국가장학금 2유형에 참여 하기 위하여 차지하는 비율이 14.5%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이 비율에 맞추어 감액한 이유도 있습니다. 이렇게 감액된 예산은 증액이 필요한 다른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. 2016학년도 교비예산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?

(전체 위원: 없습니다.)

윤피식 위원장: 그럼 2016학년도 교비회계 2차 추가경정예산 심의·의결에 대한 건은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.

#### 나. 2016학년도 문경대학교 등록금관련규정에 대한 개정 신청 건

현 행	개정안																
<p>제4조 (납부기일)</p> <p>② 등록금 납부 기간 내에 학생이 그 보호자와 학과장 연서로 등록금 납부 연기 신청을 할 경우, [표 1]과 같이 등록금을 분할납부 할 수 있다. 단, 장학금 및 학비감면을 받은 학생과 은행융자로 받은 학생은 제외한다.</p> <p>[표 1]</p> <table border="1"><thead><tr><th>연기신청일수</th><th>분할납부금액</th></tr></thead><tbody><tr><td>수업일수 1/4선</td><td>등록금액 1/3에 해당하는 금액</td></tr><tr><td>수업일수 2/4선</td><td>등록금액 2/3에 해당하는 금액</td></tr><tr><td>수업일수 3/4선</td><td>등록금액 3/3에 해당하는 금액</td></tr></tbody></table>	연기신청일수	분할납부금액	수업일수 1/4선	등록금액 1/3에 해당하는 금액	수업일수 2/4선	등록금액 2/3에 해당하는 금액	수업일수 3/4선	등록금액 3/3에 해당하는 금액	<p>제4조 (납부기일)</p> <p>② 등록금 납부 기간 내에 학생이 그 보호자와--- --- (삭제)</p> <p>[표 1]</p> <table border="1"><thead><tr><th>연기신청일수</th><th>분할납부금액&lt;개정 2016.11.00&gt;</th></tr></thead><tbody><tr><td>수업일수 1/4선</td><td>등록금액 1/3에 해당하는 금액</td></tr><tr><td>수업일수 2/4선</td><td>등록금액 2/3에 해당하는 금액</td></tr><tr><td>수업일수 3/4선</td><td>등록금액 3/3에 해당하는 금액</td></tr></tbody></table>	연기신청일수	분할납부금액<개정 2016.11.00>	수업일수 1/4선	등록금액 1/3에 해당하는 금액	수업일수 2/4선	등록금액 2/3에 해당하는 금액	수업일수 3/4선	등록금액 3/3에 해당하는 금액
연기신청일수	분할납부금액																
수업일수 1/4선	등록금액 1/3에 해당하는 금액																
수업일수 2/4선	등록금액 2/3에 해당하는 금액																
수업일수 3/4선	등록금액 3/3에 해당하는 금액																
연기신청일수	분할납부금액<개정 2016.11.00>																
수업일수 1/4선	등록금액 1/3에 해당하는 금액																
수업일수 2/4선	등록금액 2/3에 해당하는 금액																
수업일수 3/4선	등록금액 3/3에 해당하는 금액																

윤피식 위원장: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할 등록금 납부와 관련하여 규정개정을 하고자 합니다. 현행과 개정안을 검토하셔서 의견 바랍니다.

길민욱 위원: 등록금 분할납부에 대한 대상을 확대할 예정입니까?

윤괴식 위원장: 현행 규정 상으로는 등록금 분할납부 대상자는 장학금 및 학비감면을 받은 학생 및 은행융자로 받은 학생은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, 실제 실무적으로는 장학금 및 학비감면 그리고 은행융자로 받은 학생들이 분할 납부를 희망한 경우에는 등록금 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자 분할 납부 신청서를 받아 이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. 뿐만 아니라, 대학 등록금 분할납부 이용제한 현황 및 개선계획(대학장학과-2242, 2016.08.10)에 대한 교육부 공문과 관련한 개선계획으로서 제한 내용을 폐지하고자 합니다. 해당 공문에 대해 검토 바랍니다.

(전체 위원 : 관련 자료를 검토 한다.)

안유정 위원: 실제로는 제한 없이 분할 납부를 희망하여 신청하는 학생들이 이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, 규정 상으로 인해 고지서나 공지사항에서도 제한 내용이 공지되어 있음을 본 적이 있습니다. 고지서나 공지사항을 통해 자격요건이 안되어 신청을 못한 학생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당 규정을 없애 일시로 납부할 경우에 드는 부담이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.

윤괴식 위원장: 그렇습니다. 다른 의견 혹은 이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?

전 위원: 없습니다. 동의합니다.

윤괴식 위원장: 그럼, 등록금에 관한 규정 개정의 건을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 이것으로 등록금 심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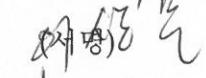
위 사실을 확인함.

2016년 11월 23일

위원장 윤괴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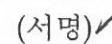
위원 이상문



위원 길민숙



위원 이영호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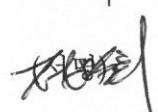
위원 안유정



위원 고민서



위원 정명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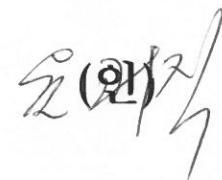


위원 박선신



위와 같이 의결되었음을 보고 합니다.

문경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장



문경대학교총장 귀하